

[별표 6]

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

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	산 정 기 준
1년이상 20년 미만	퇴직당시 평균임금(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)의 6개월분

※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.